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초청장(F-1-5 비자 신청)

<유의사항>

- ▶ 이 초청장은 결혼이민자(초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을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초청하는 초청인이 작성(공란에 해당 정보를 기재하거나 []에 √표)하여야 합니다.
 - ※ 초청인 : 결혼이민 가정의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다만, 한부모 결혼 이민자는 국적·영주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초청 가능)
- ▶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심사가 진행됨이 원칙이니, 영사가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초청인께서는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시고, **답변과 관련된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답변을 누락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 초청·피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께서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

1. 초청인의 인적사항

1.1 성명		1.2 성별 []남 []여	
1.3 국적(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도 함께 기재)		1.4 생년월일 년 월 일	
1.5 주소			
1.6 집 전화번호	1.7 휴대전화번호	1.8 전자우편(e-mail) 주소	

2. 초청인의 가족사항

2.1 초청인의 동거 가족(외국인 포함)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 서식에 맞게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초청 목적(사유)

3.1 아래 초청 사유 중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자녀 양육지원(지원대상인 자녀의 성명 :)
[] 초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¹⁾ 또는 중증장애²⁾가 있는 경우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3.2 아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1. 초청인과 배우자가 직장생활 등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외부활동을 하고 있다면 직업, 직책 등 관련 정보도 함께 기재바랍니다).

3.2.2. 현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중증질환 등이 있는 가족 간병)하고 있는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의 도움이나, 어린이집·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와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함께 기재바랍니다).

3.2.3. 피초청인이 입국하면 가정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3 위 초청 목적(사유)와 관련하여 피초청인(사증발급 신청인)이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초청 전력

4.1 초청인은 과거 결혼이민자(초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을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습니까(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예
[] 아니오

4.2 위 “4.1” 항목에 “예”라고 답하였다면, 초청한 사람(피초청인)의 인적사항 정보를 아래 서식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세요(C-3 등 단기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영문 성명)	국적	생년월일	초청 횟수	현재 국내(한국)에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

5. 범위반 사실 유무

5.1 초청인은 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2항,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또는 제33조의3(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구체적 범위반 사실과 범칙금 또는 벌금을 납부한 날(연월)을 아래에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5.2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그 외국인의 인적사항(영문성명과 생년월일)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연월)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6. 피초청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6.1 초청인과 피초청인(사증발급 신청인)의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

[] 초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6.2로 이동)

[] 초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전혼관계 출생자녀 (→ 6.2로 이동)

6.2 초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모두 사망 (선택시 사망진단서 추가 제출)

[] 초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모두 60세 이상 (선택시 나이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 추가 제출)

[] 초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질병 등으로 인해 입국이 어려움 (선택시 의사 진단서 및 사유서 추가 제출)

[] 기타 (선택시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 등을 추가 제출)

6.3 피초청인을 기준으로 피초청인, 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관련 정보를 아래 서식에 맞게 빠짐없이 모두 정확하게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영문 성명	국적	거주지	생년월일	연락처
피초청인					
배우자					
부					
모					
자녀					
자녀					
자녀					
형제					
자매					

6.4 피초청인은 과거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아래 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방문기간	방문목적	입국 시 체류자격	방문지역

6.5 위 “6.4” 항목에 “예”라고 답하였다면, 피초청인은 과거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벌금을 납부한 날(연월),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날(연월)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연월)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7. 기타 관련 정보

▶ 이번 초청 건과 관련하여 사증발급 심사에 고려할 그 밖의 정보가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시오.

8. 서류 작성 시 도움 여부

▶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까(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오)

[] 아니오

성명	주소	연락처	초청인과의 관계

9. 기재사실 확인 및 초청제한 등에 대한 유의사항

가. 이 초청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초청인은 해당하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필요한 답변이나 입증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초청장에 기재된 답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초청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초청장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허위 초청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 초청장을 작성하였으며, 위의 "기재사실 확인 및 초청제한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_____를 방문동거(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초청인

(서명 또는 인)